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10. 10 선고 2024가단3957 판결 [건물명도 등 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0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2024. 3. 27.부터 위 가.항의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7,7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이균부

별지